

여름철(장마철) 대비

자가차량 관리 요령

여름 운전은 높은 기온 때문에 엔진에 무리가 쉽게 올 수 있으므로 미리 엔진룸을 철저하게 정비해야 한다. 보통 시내에서 출퇴근이나 업무용으로 차를 쓰는 경우에는 교통체증 때문에 공회전 시간이 늘어나 엔진에 큰 부담을 준다. 그리고 가족단위로 드라이브를 떠나는 경우, 승차인원도 차에게는 부담스러운 편이고, 더구나 에어컨까지 켜고 달리다보면 차의 엔진은 혹사를 당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초여름의 엔진룸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비오는 날엔 노면이 젖어 미끄러지므로 평소보다 운전이 힘들어 진다. 가장 미끄러울 때는 비가 막 오기 시작할 때이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비오는 날은 핸들이나 브레이크 조작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평상시보다 방어운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냉각수 점검

여름운전에서 정비가 불량할 때흔히 겪는 트러블은 오버히트다. 오버히트는 냉각계통의 기능이 멀어져 엔진이 과열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엔진이 꺼지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오버히트가 한번 일어나면 엔진에 큰 무리가 오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

냉각수를 점검할 때 먼저 그 양을 점검하여 적당한지를 살펴본다. 확인하는 방법은 시동을 걸어 엔진이 온도가 정상온도에 이를 때까지 공회전을 시킨 후 보조탱크에 있는 냉각수의 양이 최대선(MAX)과 최소선(MIN)의 중간 정도에 있으면 정상이다.

팬 벨트 느슨함 정도 점검

팬벨트는 엔진의 워터펌프를 돌리는 역할과 발전기의 회전자를 돌려 전기를 얻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팬벨트의 장력이 떨

어져 워터펌프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냉각수의 순환이 좋지 않으므로 냉각수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벨트는 평면을 이루고 있는 부분의 중간을 눌러, 그 눌러짐이 깊으면 위험하다. 수평면에서 1 cm가 넘게 눌러진다면 다시 조여야 한다. 또한 벨트는 너무 낡았거나 외관에 손상된 부분이 눈에 띄면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새벨트로 바꿔 끼웠을 경우 500 km에서 1천 500 km 정도의 거리를 달릴 때 까지는 늘어나므로 중간에 한번쯤 장력을 조절해주어야 미끄러짐 현상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엔진오일 점검 필수

초여름 엔진점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엔진오일은 엔진의 성능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오일교환을 한지 조금 오래된 차들은 미련없이 바꿔주는 것이 안전하다. 오일필터도 오일



교환을 할 때 함께 바꿔줘야 한다.

그러나 바꾼지 얼마 안되는 차들은 그 양을 한번쯤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그 방법은 ① 차를 평坦한 곳에 주차시키고 ② 엔진 시동을 끈지 최소한 5분이 지난 상태에서 ③ 오일 레벨 게이지를 뽑아 깨끗이 닦은 다음 ④ 끝까지 게이지를 꽂았다가 다시 뽑아 오일양을 점검한다.

배터리 체크

엔진의 시동과 각종 전기장치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는 전자식 부품을 많이 쓰고 있는 요즘 차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비 포인트다. 배터리의 정비 포인트는 배터리액과 케이블은 터미널과 배터리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배터리액은 수준점을 점검하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증류수로 보충해준다. 이 때 증류수를 많이 넣어 배터리액이 넘치면 엔진룸의 바닥이 부식되므로 적당히 넣어야 한다.

브레이크 액 확인

브레이크 라이닝의 패드가 닳을 경우 브레이크 액의 수준이 내려간다. 점검을 하여 만약 수준이 내려가 있으며 라이닝을 점검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브레이크 액을 보충해준다.

브레이크 액은 습기를 빨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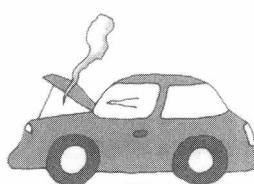
는 성질이 있어 용기의 뚜껑을 자주 열어서는 안된다. 브레이크 액에 수분이 포함되면 제동력이 떨어진다.

그밖에 정비 사항

와이퍼는 빗길 운전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위셔 액을 뿌리며 동작시켜 깨끗이 닦이는지를 살펴보고 시원찮으면 바꿔준다. 계기판과 각종 계기들의 작동상태를 확인해 두어야 하며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비상경고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차의 고장 유무를 미리 감지 할 수 없으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각종 등에 필요한 스페어전구를 미리 준비해두면 급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자가정비 가능범위

모든 자동차의 수리행위는 건설교통부가 정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확한 작업범위가 정해져 있다.

자동차관리법 36조 4항과 시행규칙 62조에 따르면 별도의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개인의 경우 머플러, 쇼크업소버, 브레이크 라이닝 등의 교환 등 비교적 폭넓은 범위에서 자동차를 손볼 수 있다.

그러나 윤활유교환, 실린더헤드, 디젤분사펌프, 가스용기에 손을 대는 등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작업과 조향장치나 냉각장치 등 안전에 문제가 될만한 작업은 개인이 할 수 없다.

만일 작업범위를 넘어 정비하다가 구청 및 경찰의 단속에 걸리거나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